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4. 6. .
발의자 : 박정자의원의외5인

1. 제안이유

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(안)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
- 우리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의 정수는 11인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

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